

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년 창업 활성화, 예비기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을 원하는 학생, 동아리 및 예비 창업자 등의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대신대학교 창업지원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.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.

1. 창업을 원하는 학생, 동아리 및 예비 창업자 등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예비기술창업자 육성
2. 벤처캐피탈리스트, 동문창업자, 지역기업인, 창업(취업)유관기관 담당자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케팅, 특허, 컨설팅(홍보 및 시장개척) 등 사업화를 지원
3. 창업관련 연구 및 개발, 경영 및 세무업무 지원, 기술정보 제공, 법률 및 지도상담
4.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
5. 취·창업지원협력에 관한 업무
6. 기타 지원센터 운영에 부하는 사업

제2장 조직

제3조(조직) ① 지원센터에는 창업지원지원센터장(이하 ‘센터장’이라 한다.)을 두며,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산학협력단장 등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
③ 지원센터에는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직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둘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에는 창업사업별로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⑤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에 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자문위원) ①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자문위원(내부, 외부)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과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1. 입주동아리의 경영·기술지도 지원을 상시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 경영지도사, 변리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등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2. 대신대학교의 교수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3. 창업전문가, 기업 CEO 등을 섭외하여 창업멘토/보육닥터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창업의 절차 및 경영마케팅 교육 및 자문
2. 법규제도, 세무회계 분야 및 사회보험제도 교육 및 자문
3. 벤처캐피탈리스트, 동문창업자, 지역기업인, 창업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케팅, 특허,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

제5조(사무관리) 지원센터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 다만, 창업교육 등의 효율적 관리

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, 센터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두며,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원센터 사업 및 창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창업정보, 전략, 알선, 운영,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
3. 창업성과 관리,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장 기타운영

제10조(재정) 지원센터의 재정은 산학협력단 회계, 국고, 교비, 기부금 및 보조금,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기준) 지원센터의 회계운영 기준은 우리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제12조(운영세칙)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